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개별시설) 사업비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

내 용

충청남도 예산군에서는 2014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개별시설) 사업 대상자로 ○○○을 선정 통보(2014. 12. 4.)하고, ○○○은 2014. 12. 5. 활성오니시설을 위해 276,000,000원(보조 110,400,000원, 용자 165,600,000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비 및 자부담금 집행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대상자 ○○○은 충남 예산군 소재 ○○○○건설(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5월에 공사금액 202,400,000원으로 견적서를 받아 공사계약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으로부터 207,041,009원으로 견적을 받아 2014. 9. 29. 207,041,009원으로 ○○면을 통하여 예산군에 사업신청을 하였으

며, 2014년 10월에 ○○○○으로부터 282,495,566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군 ○○○○과 업무담당자에게 당초 같은 해 9월에 신청한 사업을 276,000,000원으로 변경을 요청(구두로 요청하여 근거서류는 없음)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2014년 5월에 최초로 작성한 견적서와 같은 해 10월에 변경 작성한 견적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세부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원가의 차이점은 [붙임1]과 같이 2014년 10월에 전처리시설(집수조) 공사 22,019,000원(재료비 9,911,000원, 노무비 11,445,500원, 경비 662,500원)이 신규로 추가 되었으며, 기계설치공사 34,950,000원(재료비 32,500,000원, 노무비 2,450,000원) 증가, 부상조제작설치공사 5,100,000원(재료비 2,000,000원, 노무비 3,100,000원) 증가, 배관공사 3,800,000원(재료비 800,000원, 노무비 3,000,000원) 증가, 전기공사 및 시운전 6,600,000원 증가 등 총합계 72,469,000원(재료비 49,711,000원, 노무비 22,095,500원, 경비 662,500원)이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견적 비교(5월분과 10월분)

품 명	5월 견적금액(원)	10월 견적금액(원)	증감(원)
1.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171,061,660	243,530,660	72,469,000
2.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13,000,000	24,353,066	11,353,066
3. 부가가치세 (10월 견적은 공과잡비 및 경비)	18,406,166	14,611,840	△ 3,794,326
합 계	202,467,826	282,495,566	80,027,740

위 보조사업자 ○○○은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2014년 5월에 ○○○○과 계약한 202,400,000원의 공사 외에 추가 또는 증가되는 견적분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15. 12. 23.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며, 예산군은 2015. 12. 30. 결과보고 및 보조금 110,400,000원을 지출한 바, 결과보고서의 세부사업 실적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부사업 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공사 내역	사업계획			완료내역			사업비
	품명	규격	수량	품명	규격	수량	
계							280,675
활성오니 기계설비	방류시스템	기계설비공사 (70톤/일)	1식	방류시스템	기계설비공사 (70톤/일)	1식	202,400
고액분리기 수리	고액분리기 여과포 등	-	1식	고액분리기 여과포 등	-	1식	5,280
전기공사	정화시설 1차 간선공사	FCV35Q*4C케이블 외 19중	80m	정화시설 1차 간선공사	FCV35Q*4C케이블 외 19 중	80m	4,070
장비사용	포크레인	495,000*25.5일	25.5일	포크레인	495,000*25.5일	25.5일	12,430
철물	잡자재	세트앙카3/4*6외 15종	1식	잡자재	세트앙카3/4*6외 15종	1식	2,761
철재	파이프, 철근	백관파이프(25A)외 2종	300	파이프, 철근	백관파이프(25A)외 2종	300	8,932
레미콘	레미콘	25-21-80 외 1종	47㎡	레미콘	25-21-80 외 1종	47㎡	3,162
인건비	인건비	용접, 목수, 잡부	611.5일	인건비	용접, 목수, 잡부	611.5일	41,640

2014년 5월 견적에 비해 같은 해 10월 견적에서 사업이 추가된 것은 전처리(집수조) 부분 22,019,000원(노무비 11,445,500원)이며, 그 외 기존 공사부분에서 증가된 금액이 50,450,000원(노무비 10,650,000원)으로 그 중에서 총 노무비 증가분은 22,095,500원이나, 사업 결과 보고서의 인건비 지출은 41,640,000원으로 19,544,500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붙임2]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고정급 형식으로 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위해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농장 운영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내국인 인부를 직접 사역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붙임3]과 같으며, 통장 거래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사

업계획서의 견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건비는 ○○○○에서 2014년 5월에 제출한 견적서 대비 같은 해 10월에 제출한 견적서에서 증가하는 노무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최대한 인정하여 견적서대로 모두 다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22,095,5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초 사업비 정산 시 인건비로 41,6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당해 농장 인부의 월 노동대가에 대한 임금 지급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사업비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위 [표2]에서 활성오니 기계설비 202,400,000원, 고액분리기 수리 5,280,000원, 전기공사 4,070,000원, 장비사용 12,430,000원, 철물 2,761,000원, 철재 8,932,000원, 레미콘 3,162,000원이며, 그 외 인건비는 2014년 5월과 같은 해 10월 견적의 차액 노무비인 22,095,500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 사업자가 2015. 12. 23. 제출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의 첨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레미콘 지출에서 1,268,050원이 적게 계산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경우 262,398,550원이 총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당초 확정된 사업비는 276,000,000원이고, 지출로 인정된 사업비는 262,398,550원 이므로 차액 13,601,450원이 과다하게 사업비가 정산되었기 때문에 지원비율(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에 따라 보조금 5,440,580원을 회수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예산군수는

[시정] 2014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개별시설)에 대해 다시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 5,440,580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터 회수하여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2,720,290원) 및 지방비(2,720,290원) 세입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정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원가 견적 비교(5월분과 10월분)

품 명	구 분	5월 견적(원)	10월 견적(원)	증감(원)
1. 전처리(집수조)	재료비	-	9,911,000	9,911,000
	노무비	-	11,445,500	11,445,500
	경 비	-	662,500	662,500
	합 계	-	22,019,000	22,019,000
2. 기계설치공사	재료비	72,050,000	104,550,000	32,500,000
	노무비	8,300,000	10,750,000	2,450,000
	합 계	80,350,000	115,300,000	34,950,000
3. 부상조제작설치공사	재료비	27,271,660	29,271,660	2,000,000
	노무비	12,050,000	15,150,000	3,100,000
	합 계	39,321,660	44,421,660	5,100,000
4. 배관공사	재료비	22,740,000	23,540,000	800,000
	노무비	7,950,000	10,950,000	3,000,000
	합 계	30,690,000	34,490,000	3,800,000
5. 전기공사 및 시운전	재료비	15,000,000	19,500,000	4,500,000
	노무비	5,700,000	7,800,000	2,100,000
	합 계	20,700,000	27,300,000	6,600,000
합 계	재료비	137,061,660	186,772,660	49,711,000
	노무비	34,000,000	56,095,500	22,095,500
	경 비	-	662,500	662,500
	합 계	171,061,660	243,530,660	72,469,000

[붙임2]

외국인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입금일	외국인 인부 명					합계
	A	B	C	D	E	
'15.6.11.	1,650	1,200	1,200	-	-	4,050
'15.7.10.	1,650	1,167	1,167	-	-	3,984
'15.8.12.	1,650	1,300	1,300	-	-	4,250
'15.9.4.	800	-	-	-	-	800
'15.9.9.	1,650	1,300	1,300	-	-	4,250
'15.9.25.	-	-	-	3,800	-	3,800
'15.10.9.	1,650	1,350	1,350	-	-	4,350
'15.11.3	-	-	-	3,800	-	3,800
'15.11.6.	1,650	1,350	1,350	-	-	4,350
'15.11.6.	800	-	-	-	-	800
'15.12.5.	-	-	-	3,800	-	3,800
'15.12.7.	1,650	-	-	-	-	1,650
'15.12.7.	1,200	-	-	-	-	1,200
'15.12.10.	-	1,350	1,350	-	-	2,700
'15.12.14.	-	-	-	-	1,300	1,300
합 계	14,350	9,017	9,017	11,400	1,300	45,084

[붙임3]

내국인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인부 명	사역 내역 및 인건비 지출액				비고
	사역기간	노임단가	사역일수	지급액	
○○○	9월 중	200	1	200	용접공
○○○	9월 중	200	3	600	목수
○○○	9월 중	100	3	300	인부
○○○	9월 중	100	1	100	인부
○○○	10월 중	200	2.5	500	용접
○○○	10월 중	100	1	100	인부
합 계			11.5	1,800	